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

제정 2023. 12. 29. 조례 제3590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어린이 통학로"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 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 "어린이 보호구역"과 그 밖에 안양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.
 - 2. "교육시설"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 - 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 - 나.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・특수학교
 - 다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
 - 라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 중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
 - 마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 안학교,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
- 제3조(책무)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·개 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.
 - ② 안양시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.
- 제4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5년마다 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통학로 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 다만, 시장은 안양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통

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

- 학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- ② 통학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- 1. 어린이 통학로 현황
- 2.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
- 3.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· 관리
- 4.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 · 관리
- 5.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폐지 또는 이전에 대한 사항
- 6. 어린이 통학로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
- 7.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 지원
- 8. 어린이 통학로의 차량진입제한 협조방안
- 9. 어린이 통학로 내의 불법주정차 등 방지 대책
- 10.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
- 제5조(실태조사)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 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통학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6조(어린이 통학로의 지정)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 - 1. 「도로교통법」 제3조·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·관리
 - 2.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・관리
 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
 - ③ 시장은 사업 시행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교육시설의 장과 학부모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7조(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심의 등)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
 - 1. 통학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 - 2. 제6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·관리 등에 관한

사항

- 3.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
- 제8조(어린이 등·하교 교통지도) 시장은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·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,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 한 등·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- 제9조(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)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에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,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
 - 2.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
 - 3. 어린이 통학로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, 정비, 유지에 관한 사항
 - 4. 해당 교육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
 - 5.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
 - 6. 공사 전 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 -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공사 를 시행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.
- 제10조(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)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어린이 통학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, 관할교육지원청, 어린이 교통안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12조(공동주택 등의 통학차량 안전지대) 시장은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등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- 제13조(지원)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

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

하여 등·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투명우산, 가방안전덮개, 호루라기, 교통안전카드 등 필요한 안전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안양시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및 제7조를 삭제한다.